

2014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

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의 수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무역장벽 극복을 위한 2014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년 2월 4일
중소기업청장

1. 사업개요

-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 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 중 시험 및 인증 비용의 일부를 지원

2. 신청자격
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- 지원제외 사유
 - ※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우대지원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
- 1)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.
 - 다만, 회생인가 받은 자 또는 기업,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또는 기업은 제외
- 2) 동 사업이 진행 중 이거나 미완료된 상태인 기업
- 3)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
- 4)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(단, 제품분야별, 신청품목,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)

□ 우대지원대상

- 중소기업 건강관리 추천서 발급기업(유효기간 이내, 평가점수 60점 이상취득)
-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에 따른 홈쇼핑 판매기업

3. 지원규모 및 예산

- 2014년 예산 : 132.6억원, 약 1,700업체 지원

1) 지원분야

| 지원분야 | | 금액(안) | 지원업체수(안)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
| 일반규격인증 | 사업운영지침【별표1】의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대상 제품인증 분야 | 100억원 | 1,600 |
| 고부가가치인증 | 인증획득소요비용(컨설팅비용 제외)이 3천만원 이상인 제품인증 | 32.6억원 | 100 |

※ 분야별 금액·지원업체수는 사업집행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

- 2) 지원비율 : 지원분야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 및 수출능력구분에 따라 50~70% (일반규격인증 최대 3,000만원, 고부가가치 인증 최대 5,000만원까지 지원)비율로 차등지원

| 구분 | 지원비율 | 기준 |
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|
| 내수기업 | 70% | 내수기업 |
| 수출기업 | 50% | 수출실적 5,000만불 미만 |

- 동일 차수에 2개 인증까지 신청 가능

- ※ 일반규격인증 1개, 고부가가치인증 1개로 혼합하여 신청가능하나, 별도 시스템에 각자 신청해야 함(신청내용 동일)
- ※ 고부가가치 인증으로 신청하였으나 관리기관 확인과정에서 고부가가치 인증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명된 경우 탈락처리함(전환불가)
- ※ 일반규격인증, 고부가가치인증 전체 신청건수가 2개를 초과할 경우 신청건수 전체를 탈락처리함

- 사업신청기간 최대 3개월 이내(신청일 기준)에 해외규격인증을 이미 획득하고 협약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도 인증획득비용 지원
- 정부출연금의 지급은 완료보고 후 인증획득에 소요된 총 소요비용에 수출능력구분비율을 적용한 소요산정액과 정부출연금 한도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정부 출연금으로 지급

4. 지원내용

□ 지원내용 개요

- 각 분야별 해외규격인증 획득비용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 및 수출능력구분에 따라 50~70%(일반규격인증 최대 3,000만원, 고부가가치 인증 최대 5,000만원까지 지원) 비율로 차등지원
- 지원분야별 한도

(금액 : 천원)

| 지원분야 | 출연금한도 | | | 컨설팅 소요비용 한도 |
|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| 최대한도 | 내수기업 | 수출기업 | |
| ▪일반해외규격인증* | 30,000 | 70% | 50% | 사업운영 지침 참조 |
| ▪고부가가치 해외규격인증 | 50,000 | 70% | 50% | 4,400 |

*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사업운영지침 【별표3】 , 【별표4】 참조

□ 일반규격인증 지원

- 사업운영지침 [별표1]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대상(218개 인증) 제품인증 분야

□ 고부가가치 해외규격인증 지원

- 해외규격인증 획득 시험.인증 비용(컨설팅비 제외)에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고가 인증의 경우, 최대 5천만원 한도까지 지원
- 의료기기, 건축자재, 군사용 장비, 방폭(防爆), 건설기계, 에너지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나, 인증비용이 높은 분야 위주 지원

5. 추진일정 및 신청방법

□ 신청기간 : 2014년 2월 10일(월) 09:00 ~ 2014년 10월 31일(월) 18:00까지

| 구분 | 1차 사업 | 2차 사업 | 3차 사업 | 4차 사업 | 5차 사업 |
|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|
| 신청·접수 | 2.10~2.28 | 4.1~4.30 | 6.1~6.30 | 8.1~8.31 | 10.1~10.31 |
| 평가·선정 | 3.1~3.20 | 5.1~5.20 | 7.1~7.20 | 9.1~9.20 | 11.1~11.20 |
| 협약체결 | 3.21~3.31 | 5.21~5.31 | 7.21~7.31 | 9.21~9.30 | 11.21~11.30 |

* 지원 차수는 지원 수요에 따라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.

□ 신청방법 : 온라인(인터넷)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

※ <http://www.exportcenter.go.kr> 회원가입 로그인 사업신청
(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)

□ 신청 구비서류

- [별첨] 2014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업체 구비서류

□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

- 신청업체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(<http://www.exportcenter.go.kr>)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[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] → [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] → [인증신청] → [해외인증신청]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 등록
- 고부가가치인증의 경우 동 사이트에 별도의 신청메뉴 마련
- 신청서를 출력하여 대표자 날인 후 접수일까지 첨부서류와 함께 본점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

* 마감당일 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

7. 선정평가 및 추진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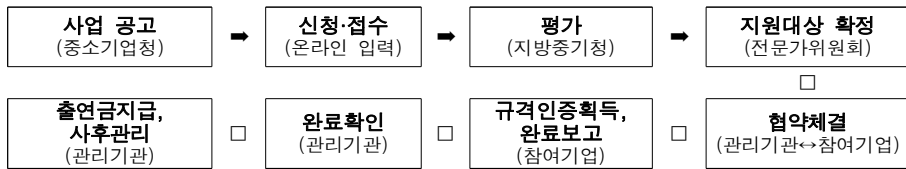
□ 선정평가

- 접수한 지방청에서 관계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를 실시
 - * 관계전문가 : 지방중소기업청 직원, 수출지원센터 소속 파견 직원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- 가점부여
 - 지방소재(서울, 경기, 인천 제외)기업
 - 해외규격인증 교육*이수업체
 - * KTL, KTR 및 지방중기청 시행교육
 - 기타 혁신형기업(Inno-Biz, 벤처, 경영) 등

□ 지원대상 확정

- 민·관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된 ‘전문가위원회’를 통해 중복신청, 지원비용/규격인증의 적정성, 인증획득 가능성 등에 대한 심사 등 지원대상 및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

□ 추진절차



8. 유의사항

- 고부가가치 인증과 일반규격인증 간 신청접수마감 후 상호 전환이 불가능하므로 사전 견적에 유의
- 컨설팅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복수의 컨설팅사에 대해 사전 비교견적을 받아 가격, 컨설팅기관의 지원실적 등을 감안하여 결정 권장
- 컨설팅기관 결정 후에는 담당컨설턴트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증획득 절차 진행을 권장

- 동사업은 기업이 필요한 비용을 예산한도 내에서 일부(50~70%)만 사후 지급하는 사업임(인증획득 실패시 지원 없음)
- 기업의 부담이 전혀 없게 하겠다는 일부 컨설턴트나 컨설팅업체의 허위 제안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청 또는 관리기관으로 신고바람

9. 기타 고려사항

- 사업은 원칙적으로 본 공고문에 따라 5차에 나누어 접수→평가→협약이 진행되나, **사업 공고 후 예산소진정도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**
-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동 사업운영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사업설명회(각 지방청별 2월 2~3째주 예정)는 추후 일정공지

10. 문의 및 확인

| 담당기관 | | 전화 |
|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사업총괄 | 중소기업청(해외시장과) | 042-481-4575 4514 |
| 관리기관 | 일반규격인증 | 한국산업기술시험원 (중소기업인증지원센터) |
| | 고부가가치인증 |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(중소기업수출인증사업단) |
| | | 02-860-1312~3 02-507-8123~6 |

<평가 및 증빙서류 관련 문의 :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청>

| 지방청명 | 전화번호 | FAX | 주 소 |
|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서울지방청 | 02)2110-6332 | 02)2110-0663 | (427-700)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105호 |
| 부산·울산청 | 051)601-5161 | 051)341-0364 | (612-704) 부산 해운대구 APEC로 30 BEXCO 제2전시관 3층 371호 |
| 대구·경북청 | 053)659-2245 | 053)626-8771 | (704-833) 대구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-11 |
| 광주·전남청 | 062)860-9193 | 062)366-9671 | (502-723)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|
| 경기지방청 | 031)201-6945 | 031)201-6949 | (443-761)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|
| 인천지방청 | 032)450-1132 | 032)818-8364 | (405-849) 인천 남동구 은봉로 82 |
| 대전·충남청 | 042)865-6151 | 042)865-6159 | (305-343)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104 |
| 강원지방청 | 033)260-1672 | 033)260-1679 | (200-944)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 |
| 충북지방청 | 043)230-5374 | 043)235-2494 | (363-883)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|
| 전북지방청 | 063)210-6465 | 063)210-6489 | (560-860)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|
| 경남지방청 | 055)268-2542 | 055)262-5012 | (641-060)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|